

외국의 언론관계 판결

미국 판결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피고의 보도가 원고 거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원고 거주지에서의 재판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

원 고 : Vincent E. "Bo" JACKSON and Ellen Coleman

피 고 : The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 Medianews Group, Inc., Medianews Group Interactive, Inc., Jim Mohr, Steve Lambert, and Robert Balzer, Defendant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005년 10월 26일 선고.

쟁 점 - 미국의 여러 주에 관련된 사건(diversity)에 대한 연방 제1심법원(일리노이 주 소재)의 인적 관할 준비

배 경 -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원고가 출판물(인터넷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고의적인 감정적 고통의 부과를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신문발행인,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자회사 그리고 발행인의 피고용인에 대하여 일리노이주에 있는 연방 제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 각하를 구했다.

결 론 - Moran 연방 제1심법원 판사는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인적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피고들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디어 내용의 규제

(1) 명예훼손 - 본안 전 절차 - 일반 관할 (§11.1203)

캘리포니아 주 온타리오 부근에 사는 주민들을 독자로 하는 피고들의 뉴스 웹사이트는 "모 영양학자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운동 선수인 원고가 엉덩이를 잃게 된 것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원고는 위 기사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의도적인 감정적 고통의 부과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연방 제1심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 관할(general jurisdiction)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 주의 웹 서버들이 자유

롭게 위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위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할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 법원에 일반적인 관할을 허용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계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 명예훼손 - 본안 전 절차 - 특별 관할 (§11.1203)

원고는 또한 일리노이 주에 있는 연방 제1심법원이 특별 관할(specific jurisdiction)을 갖는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왜냐하면 피고들은 일리노이 주의 정보 소스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일리노이 주에 대한 이야기나 일리노이 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리노이 주에 산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들 신문의 인쇄판 구독자 65,000명 중 1명만이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고, 인터넷판 구독자는 단 한 명도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훼손된 명예는 전국적인 규모의 것인데 반해, 피고들의 웹사이트는 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민들과는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명예훼손 기사가 일리노이 주까지 전달되리라는 것도 예견하기 어렵다. 또한 일리노이 주민이 피고들의 웹사이트에서 일리노이 주의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지역적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국적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을 때에는 전국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 웹사이트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을 하여야만 하는 이익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Moran, J. 연방 제1심법원 판사

원고 Vincent “Bo” Jackson은 The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 MediaNews Group Inc., MediaNews Group Interactive, Inc., Jim Mohr, Steve Lambert, Robert G. Balzery를 피고로 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고의적인 감정적 고통의 부과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인적 관할의 결여와 부적절한 토지 관할을 이유로 이 소를 각하하거나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했다.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1. 배경

미국 영양학회의 회원이자 스포츠, 심장혈관 및 건강에 관한 식이요법 실무연구회 회원인 Ellen Coleman은 2005. 3. 24. California 주 Riverside 에서 열린 포럼에서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의 위험에 대한 발표를 했다. Inland Valley Daily Bulletin 신문의 스포츠면 편집자인 Mohr는 그 포럼에 참석한 후 “(위) 포럼이 스테로이드 사용의 위험을 강조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Coleman은 ‘Bo Jackson이 그의 엉덩이를 잃은 것은 신진대사 약물의 오용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2005. 3. 24. 저녁 인터넷 웹사이트 ‘www.dailybulletin.com’에 게시되고, 다음날 Inland Valley Daily Bulletin 신문에 실렸다.

위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사 내용이 이 소송의 쟁점이다.

Coleman은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통하여, 자신은 위 포럼에서 식이요법과 스테로이드에 관해 발표했고 그 후 Mohr와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녀

는 또한 자신의 발표나 Mohr와의 인터뷰에서 Bo Jackson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에 실린 것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Jackson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California Newspapers Partnership은 Inland Valley Daily Bulletin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고, MediaNews Group Interactive, Inc.는 MediaNews Group, Inc.의 자회사로서 www.daily-bulletin.com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Jim Mohr는 스포츠면 편집자이고, Steve Lambert는 편집자이며, Robert G. Balzer는 Inland Valley Daily Bulletin의 발행인이자 CEO이다.

II. 검토

피고들은 연방민사소송법(Fed.R.Civ.P.) 12(b)(2)에 의한 인적 관할 결여를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신청한다. 그 신청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리한 Coleman의 선서 진술서를 반박할 만한 다른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견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Transcraft Corp. v. Doonan Trailer Corp., 1997 WL 733905, *1 (N.D.Ill.1997). 원고는 먼저 인적 관할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RAR, Inc. v. Turner Diesel, Ltd., 107 F.3d 1272, 1276 (7th Cir.1997).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우리는 원고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관할에 있어서, 연방 제1심법원은 일리노이 주법원이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해 관할을 가질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적 관할을 갖는다. Global Relief v. New York Times Co., 2002 WL 31045394, *5 (N.D.Ill.2002). 비거주자는 연방 및 주의 적법 절차 원칙과 일리노이

주의 long-arm법(어떤 자의 행위가 특정 지역에 손해를 끼치거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당해 주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법 - 번역자 註)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리노이 주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Transcraft Corp., 1997 WL 733905 at *2. 일리노이 주의 long-arm법은 일리노이 주 헌법과 미연방헌법(735 ILCS 5/2-209(c): Id.)에 의해 허용되는 근거에 기해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고들에 대한 인적 관할이 적법 절차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피고들이 일리노이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s) - “그 주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페어플레이(fair play)와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관련성” - 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야만 한다. Int'l Shoe Co. v. State of Wash., Office of Unemployment Comp. and Placement, 326 U.S. 310, 316 (1945).

법원은 International Shoe 사건을, “피고의 재판지에 관련된 행동과 연관성은, 그가 그곳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444 U.S. 286, 297, 100 S.Ct.559, 62 L.Ed.2d 490 (1980).

[1] 원고는 이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 관할 및 특별 관할 모두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일반 관할은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거나 일리노이 주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인정된다. Helicopteros Nacionales de Colombia, S.A. v. Hall, 466 U.S. 408, 104 S.Ct. 1868, 80 L.Ed.2d 404 (1984); Euromarket Designs, Inc. v. Crate & Barrel Ltd., 96 F.Supp.2d 824, 833 (N.D.Ill.2000) 참조. 원고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이제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사업의 궁극적인 형태를 이룩했고”, 일리노

이 주의 웹서퍼들이 피고들의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 관할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단순한 유지만으로는 일반 관할이 생기기에 부족하고 (Euromarket Designs, Inc., 96 F.Supp.2d at 833),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행동이 이 법원에 일반 관할이 생기게 할 만큼 실질적이고 계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이 피고들에 대해서 특별 관할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특별 관할은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야 인정된다.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471, 105 S.Ct. 2174, 85 L.Ed.2d 528 (1985). 특별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과 일리노이 주 사이에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매우 희박한” 관련성만 있어서는 아니고, 그 이상의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s)’이 있어야만 한다. *Burger King Corp.*, 471 U.S. at 475, 105 S.Ct. 2174,*896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서의 인적 관할은 *Calder v. Jones* 사건에서 확립되고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952 F.Supp. 1119 (W.D.Pa.1997) 사건에서 강조되었던 명예훼손의 “결과(effect)”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Calder* 사건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해서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Calder* 사건이 단지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일리노이 주에 사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터넷 기사가 일리노이 주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리노이 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Calder* 사건에 비추어 봐도 관할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주장한다.

Calder 사건에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은 플로리다 주 피고들에 대하여 인적 관할을 갖는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캘리포니아에 주거 및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이너인 원고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소한의 관련성(minimum contacts)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 재판지 그리고 소송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Calder*, 465 U.S. at 788, 104 S.Ct. 1482. 따라서 우리는 피고들, 그들과 일리노이 주와의 관계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일리노이 주의 이해관계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Calder* 사건과 다르다. *Calder* 사건에서 그 기사는 캘리포니아 정보 소스에서 나왔고, 원고의 감정적 고통과 직업적 명성에 대한 침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캘리포니아가 그 기사와 피해의 중심에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일리노이 주 정보 소스에 접촉하지 않았고 일리노이 주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일리노이 주에 산다는 것도 몰랐고, 어떠한 사건도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Calder*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주간 신문 500만 부 중 60만 부가 캘리포니아 주에 배포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6만 5천 명의 인쇄된 신문 구독자 중 1명만이 일리노이 주에 살았을 뿐이고 인터넷 신문 구독자는 단 한명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Calder* 사건의 원고 및 이 사건의 원고 모두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Calder* 사건에서는 그 침해의 결과가 이 사건에서보다 훨씬 크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했다. *Calder*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경험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

성에 대한 침해는 전국적이다 - 그의 스포츠, 비즈니스 그리고 직업적 명성은 진정 전국적 범위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는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하고 있지만(Rice v. Nova Biomedical Corp., 38 F.3d 909, 916 (7th Cir.1994); Schaefer v. Nash, 149 F.R.D. 583, 585 n. 4 (N.D.Ill.1993) 참조) 그러한 추정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도 그의 거주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eynolds v. Int'l Amateur Athletic Fed., 23 F.3d 1110, 1120 (6th Cir.1994) 참조 (피고가 세계적인 운동선수로서 그 직업적 명성이 오하이오 주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오하이오 주가 그 언론 보도의 중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시).

제7순회재판소는 Indianapolis Colts, Inc. v. Metropolitan Baltimore Football Club Ltd. P' ship, 34 F.3d 410 (7th Cir.1994) 사건과 Janmark, Inc. v. Reidy, 132 F.3d 1200, 1202 (7th Cir.1997) 사건에서 Calder 법리를 넓게 해석했다. Indianapolis Colts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인디애나 주에서 주로 발생했고 피고들과 인디애나 주의 유일한 관련성이 게임과 케이블 TV가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는 점인 경우, 캐나다 국적의 피고들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인디애나 주의 관할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가 TV 방송을 통하여 인디애나 주에 "들어갔다(entered, 혹은 인디애나 주와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번역자 註)"고 판시했으나, 그 "부가요건(addition, 피고가 TV 방송을 통하여 인디애나 주와 관련성을 갖게 된 점, 번역자 註)가 필수적인지"에 관해서는 명백히 결론 내리지 않았다. Indianapolis Colts, 34 F.3d at 412. 같은 맥락에서 법원은 Janmark 사건을 통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뉴저지 주 고객으로

하여금 원고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만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피고에 대한 관할이 생긴다고 판시했다. 그 침해 - 장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 가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했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관을 받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Janmark, 132 F.3d 1200. Calder 법리를 넓게 해석하는 제7순회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Indianapolis Colts 와 Janmark 사건에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없다. 위 사례들에서는 피고들이 명백히 그 재판지를 향해서 불법행위를 했고, 따라서 그 피해가 인디애나 주 혹은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Indianapolis Colts 사건에서 "Colts"란 상표에 대한 침해는 인디애나 주에서만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Colts"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회사가 인디애나 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Janmark 사건에서 피고는 일리노이 주에서 구매한 물품을 취소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뉴저지 주에 사는 소비자에게 접촉했다. 유일한 잠재적 피해가 일리노이 주에서만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 재판지를 향해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 두 사건의 피고들은 그 피해가 인디애나 주나 일리노이 주에서 발생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설령 원고가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적 관할이 인정되려면, 피고들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피고들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일리노이 주에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들이 그들의 웹사이트가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Jennings v. AC Hydraulic A/S, 383 F.3d

546 (7th Cir.2004) 사건에 관한 제7순회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며 적절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인적 관할을 분석함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수동적으로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이 생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Jennings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지에서 피고와 소비자 사이에 일정 수준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웹사이트의 유지만으로 인적 관할을 인정한다면, 거의 전 세계적인 인적 관할을 창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의 접근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될 경우, ‘기술적 발전이 인적 관할 분석에 변화를 주더라도, 그것이 비거주자인 피고들에 대한 주법원의 관할에 관한 헌법적 제한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된다”. 383 F.3d at 550. Jennings 사건을 되돌아 볼 때,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재판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웹사이트 문제에 있어서 그 ‘다른 요건’이란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고, 이는 Zippo, 952 F.Supp. 1119 사건에서 명백히 정의되고 있다.

Zippo 사건에서 법원은 “인적 관할이 헌법에 합치되게 행사될 가능성은 어떤 주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는 상업적 활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인터넷 관련 사건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째, 피고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를 하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interactive websites)의 경우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웹사이트(passive websites)의 경우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에 곤란하다. 셋째, 사용자가 호스트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의 경우 인적 관할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Euromarket

Designs, Inc., 96 F.Supp.2d at 838-39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www.dailybulletin.com이 “매우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사용자들과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고, 위 웹사이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www.dailybulletin.com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온타리오 부근에 사는 주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웹사이트의 모든 연락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909로 되어 있는데 반해, 장거리에서 전화하는 사람을 위한 1-800 번호 선택 옵션이 전혀 없다. 게재된 뉴스는 지역적인 것이거나 AP 통신사를 통하여 선택된 것뿐이다. 홈페이지의 날씨도 지역적인 것이고, 아무도 다른 곳의 날씨를 클릭할 수 없다. 사용자들은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쇄된 신문이나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신청 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일리노이 주민도 현재 이를 신청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일리노이 주까지 전달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Zippo, 952 F.Supp. at 1126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의 회원가입 신청을 수락하고 그들에게 패스워드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계약의 결과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전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파일들의 전달은 전적으로 피고의 통제 하에 있었다. 따라서 인적 관할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누군가가 피고들의 웹사이트에서 일리노이 주에 있는 일거리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밖의 일거리에 대해 검색할 경우 사용자는 www.careersite.com이라는 별개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아니 된다. 전국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hyperlink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www.daily-bulletin.com의 소유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인적 관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ung v. Assoc. of American Med. Colleges, 300 F.Supp.2d 119, 132, n. 5 (D.D.C.2005) 참조(제3자의 웹사이트가 이용되는 상황에서 재판지로 접근할 수 있거나 그곳으로 직접 인도하는 피고 스스로의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인적 관할을 인정할 만한 사례); Bensusan Rest. Corp. v. King, 126 F.3d 25, 29 (2d Cir.1997) (원고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뉴욕주의 long-arm 관할법의 의미에 따른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적일지라도,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들로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전국적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www.dailybulletin.com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적법 절차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예견 가능성은, 피고의 재판지에서의 행동과 연관성이 그 가 그곳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Burger King Corp., 471 U.S. at 474, 105 S.Ct. 2174. 따라서 캘리포니아 지역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 지역에서 개최된 포럼에 관한 기사에 근거하여 피고를 일리노이 주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적법 절차 관념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송에 관한 일리노이 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World-Wide Volkswagen, 444 U.S. at 292, 100 S.Ct. 559. 참조. 일리노이 주로서는 그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주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편리하게 일

리노이 주에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을 가지지만(Burger King Corp., 471 U.S. at 473, 105 S.Ct. 2174), 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일리노이 주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는 다른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발생할 지도 모를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이익이 크지 않은 것이다. Allan R. Stein, Personal Jurisdiction and the Internet 참조 : 적법 절차를 규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98 NW. UL.REV. 411 *899 (주의 관할에 관한 사전적인 규제의 이익을 판단할 때는 주의 사후적인 손해배상의 이익보다 인적 관할에서의 적법 절차 분석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의 손해배상에 대한 이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국적인 명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로서는 일리노이 주에서의 명성에 대한 침해만 주장하는 경우에 비해서 관할을 가질 이익이 더 적다.

이 사건을 Calder 사건의 침해결과 기준(effect test)과 Zippo 사건의 단계적 분류 기준(sliding scale) 그리고 관할에 관한 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인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페어플레이(fair play)와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우리는 인적 관할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인다.

III. 결 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인적 관할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인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4. No.6, pp.1173~1178

번 역 : 박재우(이정부지방법원 판사)

□

일본 판결1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자의 범행양태와 경력 등을
기재한 기사를 실명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하여
주간지에 게재한데 대해 명예·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항 소 인 : 주식회사 문예춘추(文藝春秋)·동사 대표이사 白石 勝

피항소인 : 甲野春男(구성(旧姓)乙澤)

나고야(名古屋)고법 2003(ネ) 제275호,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2004. 5. 12 민사 제2부 판결

원 심 : 나고야(名古屋)지법 1997(ワ) 제5034호, 1999. 6. 3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전항의 부분에서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의 총비용은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당사자가 구하는 재판

1. 항소인 : 주문과 같은 취지
2. 피항소인 : (1)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전후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소송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대해, 항소인이 발행한 주간지 「週聞文春」에 2회 게재된 기사에 의해 피

항소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으로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이라고 주장하는 1997년 7월 2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1심은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두 번째 기사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 손해배상금 3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피항소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외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인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것과 함께 피항소인도 부대(附帶) 항소하여 항소인에 대해 1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했으나, 환송 전 제2심은 항소인의 항소 및 피항소인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인이 상고했다.

상고심이 상기의 기사는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기사의 게재에 의해 항소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피침해 이익별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며, 더욱이 이러한 심리를 다하기 위해

환송 전 제2심의 판결 중 항소인의 항소부분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 법원에 환송한 사안이다.

본건은 미성년시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X(본건 기사 게재 당시는 성인)가, Y 발행 주간지에서 용이주도하게 X로 추지(推知)될 수 있는 가명 X'을 사용하여 그 범행양태, 비행력(歷), 교우관계 등을 기재하고, 또 X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2건의 기사 중 가명보도를 한 본건 기사만이 본건의 대상)가 게재되어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당 법원은 피항소인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기사가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본건 기사의 게재에 의해 항소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는 피침해 이익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 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당해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는 측의 그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측의 공표이유를 비교 형량하

여, 후자가 전자에 우월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기사가 본건 주간지에 게재된 당시의 피항소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당해 범죄행위의 내용 등이 공표됨으로써 피항소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항소인이 입는 구체적 피해의 정도, 본건 기사의 목적이나 의의,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 본건 기사에서의 당해(當該)정보 공표의 필요성 등 그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제반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검토한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1) 공공성 및 공익목적

① 본건 기사는 범죄(특히 본건은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흉악하고 잔악한 중대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에 관한 내용이고 일반 사회에서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 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점에 관하여, 피항소인은 범죄사실 그 자체를 보도한 부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나, 범인을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범행시 소년이었다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년법 6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당한 관심사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란, 그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 이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본건과 같이 흉악,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사실 및 이와 관련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바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 해

야 할 것이며 범인 특정 정보에 관해서도 범인이 범행 시에 소년이었다는 점을 들어, 바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③ 또 피항소인은, 본건 기사는 피항소인에 대한 인격공격을 했으며, 실명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하여 피항소인을 특정 또는 추지케 하는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기사의 구성 및 내용으로 보아, 집필태도에 현저하게 진지성이 결여되었다든가 사원(私怨)을 풍다든가 사리사욕을 추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④ 또한 피항소인은 본건 기사의 참된 보도목적이 정확한 사실보도에 있지 않고, 단지 중대한 소년 사건을 선정적으로 취급하여 가해소년을 비난하고, 범죄자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 처벌감정을 갖기 쉬운 일반 독자에게 영합하여 그 관심을 유발, 주간지의 매상을 올리려는 영리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기사의 주요목적은, 소년법의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여 소년범죄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사회에 널리 전하는데 있고, 법정을 방청한 피해자 양친의 수기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내용에 가해자 소년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흉악, 잔학한 중대범죄에 대한 출판사의 논평으로 시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 기사가 오로지 영리목적을 위해 게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진실성 및 상당성에 대해

①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본건 기사 중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든가 혹은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건 기사에는 범죄사실 뿐 아니라 공판정에서

의 피항소인의 태도 등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필자도 방청했다”, “...휴정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재등장, 주역을 자처” 등의 기술도 보이는데, 증언에 의하면 집필자는 한 번도 법정을 방청한 일이 없고, 통상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도 갖게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본건 기사의 주요목적은 감안할 때, 위의 부분이 본건 기사의 주요사실에 대해 허위를 기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또한 본건 기사 중에는 피항소인의 지적과 같이 “범인 소년은 전혀 반성이 없다”, “N2 씨는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증거의 일례로, 소년 K로부터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는 기재부분도 보인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항소인을 포함한 피고인 등 3명은 1995년의 형사재판 제2회 공판에서 살의(殺意),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피해자의 양친은 소년 K의 경우와는 달리 피항소인으로부터 사죄의 편지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의 양친이 법정에서 피항소인을 봤을 때는 주역인 체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감정을 집필자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기 기사의 기재내용은 진실이든가,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이상에 의하면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1) 본건 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항소인의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항소인의 사회적 지위, 연령이나 본건 범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프라이버시의 전달범위는 주로 출생·성장한 지역의 지인, 친구, 소년원 등에서

알게 된 자, 폭력단 관계자 등으로 생각되어 그 범위는 한정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본건 범죄는 흉악, 잔학한 중대 범죄이고 본건 기사 공표 시에 이미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피항소인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사회에 복귀하리라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항소인의 연령이 본건 범행 시 18세, 본건 기사 게재 시 21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건 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이 입는 구체적인 피해는 통상의 일반 사회인에 비해 작은 것으로 추인(推認)된다.

(2) 본건 기사의 목적, 의의

증거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소년법 개정의 논의가 시작된 상황 하에서 흉악, 잔악한 중대 사건을 공표하여 소년범죄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널리 사회에 알렸고, 동시에 범죄소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된다.

(3)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기사 공표 당시, 본건 사건 전에 발생한 山形マツト(매트)살인사건, 본건 사건 후에 발생한 神戸市 須磨구의 살인사건 등에 의해 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저연령화가 사회문제화 되어 소년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더욱이 본건 기사 공표 후인 2000년 12월에는 소년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분이 가능한 연령이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내려왔을 뿐 아니라 16세 이상의 소년이 고의적인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토록 했으며, 기소 후에는 소년이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공개적인 형사재판을 받도록 했다.

(4) 본건 기사 공표의 필요성

본건 기사 중 범죄와 관련있는 부분은, 소년에 의한 흉악, 잔악한 중대 범죄이며 그 범죄 내용은 사회 일반의 관심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될 사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건 범죄 행위 및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물론 범인의 경력 등도 포함하여 이를 모두 공표하는데

사회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피항소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 내지는 논평의 한 자료로서, 피항소인은 이러한 범죄사실 등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受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따라서 본건 기사의 공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사정

이상과 같이 본건 기사가 피항소인에 관한 것으로 추지되는 프라이버시 정보로 전달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전달에 의한 피항소인의 구체적 피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인되고, 본건 범죄 행위의 내용이 극히 흉악, 잔인하고, 본건 기사는 주로 소년 범죄 피해자의 양친의 심정을 기재하고 있고, 본건 기사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도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았고, 본건 기사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인 동시에 그 목적, 의의에 합리성이 있어 공표의 필요성이 시인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피항소인에 대해서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표하는 이유가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에 우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6) 따라서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피항소인은 당심에서 성장발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은 1997년 12월 27일 소가 제기된 이래 3회의 구두변론을 거쳐 1999년 6월 30일 제1심 판결 언도, 동년 7월 13일 항소인의 항소, 2000년 1월 11일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3회의 구두변론을 거친 후 동년 6월 29일 환송 전 제2심 판결 언도, 동년 7월 11일 항소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13일에는 상고수리신청을 했으며, 2002년 12월 20일 상고사건은 기각결정이 내

려졌다.

하지만 2003년 3월 14일 상고수리사건에 대해서는 환송 전 제2심판결 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이 파기되어 동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고야(名古屋) 고법에 환송 취지의 판결이 있어, 당심에 계속(係屬)된 것인데, 이상과 같은 심리과정에서 피항소인은 환송 전 제2심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성장발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었음이 기록상 밝혀졌고, 동 주장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157조 1항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기(時機)를 놓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제4. 결론

이상과 같이 원판결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에 관련된 피항소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 하며, 동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198호 pp. 220~229.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일본 판결2

보도에서 원고 등이 「은폐」공작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사죄문 게재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뉴스의 내용은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으나 공공성, 공익목적이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진실성의 증명도 있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

원고 : 甲野太郎, 乙山次郎
피고 : 일본방송협회(NHK), 상기대표자회장 橋本元一
고후(甲府) 지법2003(ㄱ) 제567호, 위자료청구사건
2005. 7. 5 민사부 판결, 기각·확정

주 문

1.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1.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해 별지 기재의 사죄문을 교부하라.
2. 피고는 원고 甲野太郎에 대해 일금 2,000만 엔, 원고 乙山次郎에 대해 일금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3년 12월 2일 이후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각 금액을 지불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집행선언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 NHK 종합텔레비전이 ○○현내(縣內) 뉴스를 통해 ○○현 치과 의사회 회원인 치과의사(이하 'A 치과의사'라 한다)가 별인 진료 보수 부정 청구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 치과 의사회의 간부였던 원고 등이 진료 보수 부정 청구 사실을 감독관청에서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은폐공작을 피한 것처럼 보도하는 등 왜곡된 인상을 일반 시청자에게 주어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상기 제1의 내용과 같은 청구를 한 사안이다.

제3. 당 법원의 판단

1. 다툼이 없는 사실과 증거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XX방송국의 NHK 종합텔레비전의 ○○현내 뉴스에서, 2003년 6월 5일 낮뉴스로 방송부분 1을, 저녁뉴스로 방송부분 2를, 그 후 저녁과 밤 2회에 걸쳐 방송부분 2와 동일한 뉴스를 각각 보도했다(방송부분3, 4).

방송부분 1에서는 2002년 7월 XX시의 치과의사가 가공의 진료 보수 청구를 한 것이 발각된 것과 관련,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이 매스컴에 발각된 직후에 열린 현 치과 의사회의 임시총회에서 '당시의 간부'가 "부정 청구의 발각에 대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인식하여, 사회보험사무국 등의 행정기관에 여러 번 대응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 됐다"고 발언한 내용을 다루면서 "문제의 은폐를 노리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고, 이어 '당시의 간부'의 발언이 "사실 자체를 얼버무리려는 것이 아니고, 업계의 책임하에 어떻게 하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을가를 노려 사회보험사무국과 상담하여 대처했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방송부분 2에서는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의 발각과 관련, 당시의 치과 의사회 간부가 임시총회 석상에서 "부정청구가 알려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대응했는데 아쉽게 되었다"고 발언했다며 "문제의 은폐를 도모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본건 방송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 치과 의사회의 丙川 회장이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본래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은폐(隱蔽)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발언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사실과 "부정 청구 등 의사의 윤리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방지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 본건 방송에 의한 원고 등의 특정에 대하여

<쟁점 (1)>

(1)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본건 방송에서는 현 치과 의사회의 '당시의 간부'의 발언으로 그 내용을 보도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회장직을 포함하여 임원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2) 그러나 본건 방송을 시청해 보면, ○○현의 치과 의사회라는 한정된 지역의 직업집단에 속하는 자이고, 당시 간부로 있었던 자가 의사회 총회라는 한

정된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과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한 대응발언 등을 보도내용으로 했음은 분명하다.

또 본건 방송이 ○○현 전 지역에 낮과 밤의 톱뉴스로 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간부’로 보도된 당사자가 2002년 당시의 회장인 원고 甲野나 의료보험담당이사인 원고 乙山이라는 것을 치과 의사회 회원이나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시청자가 추지하기에 충분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 등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방송이 ‘당시의 간부’라고만 보도했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원고라고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면 본건방송의 주요한 전달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원고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3. 본건 방송의 주요한 전달사실에 대하여

〈쟁점 (2)〉

(1) 「은폐」에 관하여

① 방송부분 1- ① 및 동 2 - ①은 2002년 당시의 간부가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방송부분 2 - ② 및 ③은 丙川 회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부정 청구 사건을 둘러싼 치과 의사의 증전의 대응과 신체제에서의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어떤 단체의 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스스로 은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새로 회장이 된 사람은 같은 공식석상에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었다면,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실제로 은폐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본건 방송에서는 아나운서의 발언에 덧붙여 “은폐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든가 “은폐 의혹 문제로 유감의 뜻” 등이 텔롭(telop)에 표시되어 한층 더 ‘은

폐’가 강조되어 있었으므로, 일반 시청자가 본건 방송을 시청했을 경우 현 치과 의사회의 간부가 은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는데 그치지 않고, 치과 의사회의 대응조치에 있어 동 간부가 본건 부정 청구 사건과 관련, 어떤 ‘은폐’를 도모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② 또한 본건 방송의 구성을 보면, 부정 청구 사건의 발각을 보도하면서 당시의 간부의 대응을 취급했는데, 아나운서의 발언내용은 당시의 간부가 “부정 청구의 발각에 대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인식, 사회보험사무국 등 행정 기관에 여러 번 대응했다”, “부정 청구의 사실 자체를 얼버무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업계의 책임 하에 어떻게 하면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사회보험사무국과 상담하면서 대응을 취했다”(방송부분 1)든가 “부정청구가 알려지지 않도록 행정 기관에 대응했다”(방송부분 2)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 청구 사건의 발각을 전제로 한 뉴스의 구성이나 ‘행정기관에 대응’이라는 아나운서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응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시의 간부’가 행정기관에 대해 부정 청구의 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은폐’를 도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결국 본건 방송은 2002년 당시의 간부가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을 매스컴이나 일반 국민에게 ‘은폐’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응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더욱이 ‘은폐’란 일반적으로 ‘숨기는 것, 은닉(隱匿)’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의미에서의 ‘은폐’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증거 등에 의해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실로 해석된다.

④ 따라서 본건 방송이 시청자를 향해 보도한 주요 전달 사실은 치과 의사회의 2002년 당시의 간부나 丙

川 신임회장의 상기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발언의 배경에 본건 부정 청구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간부의 대응에 '은폐'를 도모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여 보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대하여<쟁점 (3)>

(1) 이상을 전제로 본건 방송에 의해 원고 등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상기와 같이 방송부분 1 - ① 및 동 2 - ①은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관한 '문제의 은폐를 시사' 및 실제로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치과 의사회 간부의 입장에 있는 자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려움으로, 이것이 공개적으로 적시됨으로서 사회통념상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초래했음은 용이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丙川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부분 2 - ② 및 ③에 대해서도 그 범위에서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5. 본건 방송의 공익성과 공익목적에 대하여 <쟁점 (4)>

(1)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보도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그 보도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되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우선 본건 방송이 보도한 부정 청구 사건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며, 치과 의사회는 의료 종사자들의 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 기대되

는 공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관한 치과 의사회의 대응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만 한다.

(3) 다음은 본건 방송의 목적인데, 본건 방송은 뉴스로서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으로, 상기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오로지 널리 국민에게 알린다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다.

6. 본건 방송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쟁점 (5)>

(1) 방송부분 1 - ① 및 동 2 - ①에 보도된 원고 甲野의 발언은 2002년 7월에 개최된 현 치과 의사회 임시총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방송내용과 임시총회의 의사록(乙3)을 조회해 본 결과 내용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2) 방송부분 2 - ② 및 ③에서의 丙川 회장의 발언 내용은 정례이사회 의사록(乙4)과 대조해 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3) '은폐'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 甲野가 현 치과 의사회 2002년 임시총회에서의 회장 인사를 통해 "업계로서 미연에 마스크업이나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인식"하여 원고 乙山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보험사무소 등에 대응하여 미연에 방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혹시 회원 중의 어느 누구로부터 누설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역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찌하여 2년 전의 일이 지금에야 나오는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乙4), 원고 乙山이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해 마스크업에 누설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대응한 것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원고 乙山 본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A치과 의사에 대한 개별지도, 감사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해 널리 마스크업이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대응했다는 사실이 명백하

게 인정된다.

② 따라서 현 치과 의사회의 당시의 간부였던 원고들이 본건 부정 청구 사건에 대해 매스컴이나 국민에게 사실을 숨기려고 대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은폐'라고 평하는 것은 지당하며 결국 '은폐'의 사실에 대해서도 진실성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와 같이 피고의 본건 방송 중에는 원고들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면서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 보도했을 뿐 아니라 당해 적시 사실의 진실임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쟁점을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00호 pp. 243~253.

번 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